



「우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 「우리 청년도약계좌」

· 상품특징 : 청년고객 대상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

2 거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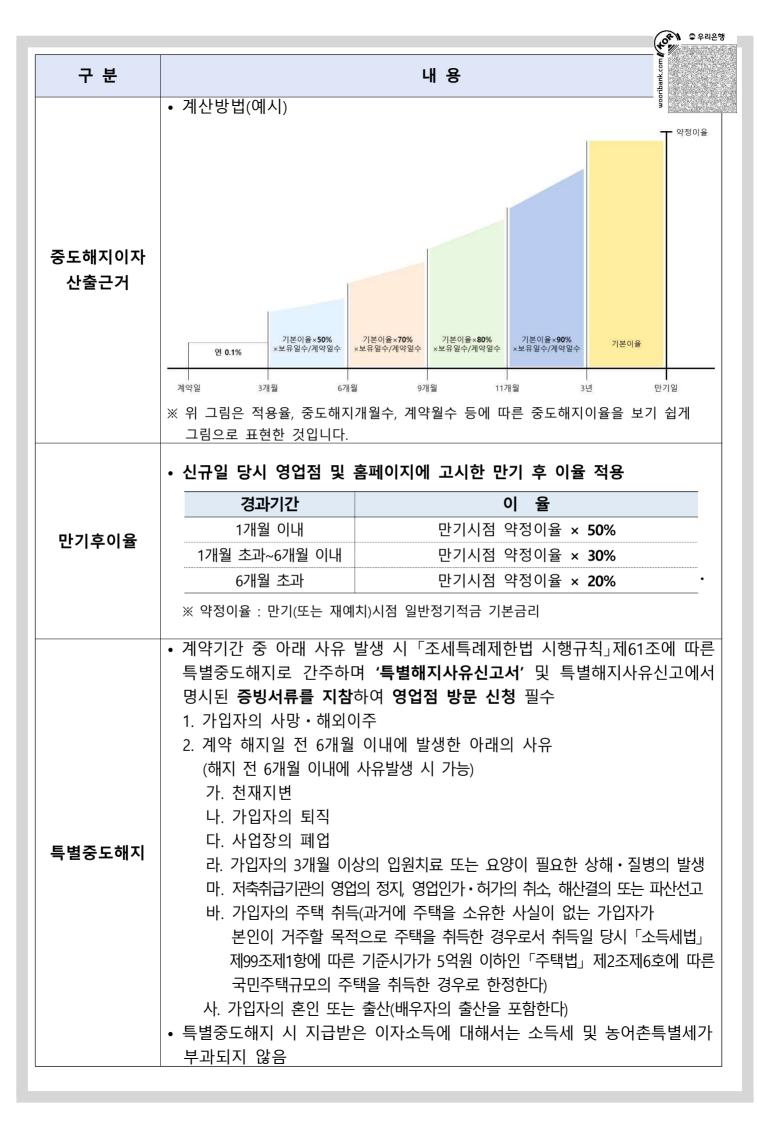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실제 계약</u>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u>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u> ① 나이 : <u>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 사람</u>		
	※ 병적증명서로 아래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u> 하는 사람		
가입대상	가. 직전년도 <u>총급여액</u> 이 <u>7,500만원 이하</u> 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u>종합소득금액</u> 이 <u>6,300만원 이하</u> 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및 「소득세법」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음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		

구 분	내 용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아래에 따른 <u>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u> 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	소득 (이하 "기준 중위소	득"이라 합니다)의 <u>250</u>	<u>% 이하</u> 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	원의 총급여, 종합소	-득과세표준에 합산5	리는 종합소득금액,		
	연정산한 사업소	득금액, 연금소득, 종	등교인소 득을 모두 합	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 구원^{주3}은 이 적	금에 가입하려는 거	주자 본인과 본인의 3	<u> </u>		
	(외국인의 경우 외국	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T; 직계 존속 ·비속, 형	M자매 조 부모를		
가입대상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	우로 한정)		
(계속)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선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	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선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주3) 주민등록표 등본 	·		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u>3개^{주4}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u>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					
	(*조국제합」제14조제38제6오에 따른 조국의 합계적이 같은 오에 따른 이사조국공의 공합회제기군음 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			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가입제한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중복가입 불가) •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 신규 : 영업점,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거래방법						
계약기간	• 5년					
	• 적용금리 : 기본금	리 + 우대금리 +	특별우대금리			
저요그리	※ 기본금리는 신규일로부터 3년까지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적용금리 (세금납부 전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 3년 경과시점부터는 변경가능					
'25.7.21 기준)	계약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특별우대금리		
	60개월	연 4.5%	연 1.0%p	연 0.5%p		
가입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기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밀	날일까지) 70만원 이하		
기심급액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구 분		내 용	ank.com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일시납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원금+이자+저축장려금)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 가능 • 최소 200만원 이상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하 금액에서 일시납 금액 (월 40/50/60/70만원 중 선택), 일시납입 기간 선택 후 일시납 확정 • 일시납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 (예시) '24년 2월 만기고객의 경우, '24년 3월까지 가입신청 진행필요 • 일시납을 희망하는 고객은 도약계좌 자격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 (ylaccountkinfa.or.kr)에서 일시납 관련정보(월 납입액/선납기간)를 등록해야 함 • 일시납을 진행한 고객은 선택한 납입개월 기간동안 추가납입이 불가함 ※ (예시) 월 50만원 및 선납기간 13개월, 총 650만원 일시납입 시					
	• 아래 항목별로 단, 우대금리는 자동이체 되고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단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입출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모두 동의한 경우 제공	금 계좌에서			
	항 목 우대금리	우대조건				
	예적금 미보유 연 0.5%p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	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급여 이체 연 1.0%p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 까지 가입기간의 1/2이상 급여이체 ^{주5)} 실적을 보유한 경우				
우대금리	카드 결제 연 0.5%p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를 통하여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이상 우리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 결제금액이 월 10만원 이상 출금된 경우				
	※ 주5) 급여이체 실적은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인정 1.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 2.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월급","급료","수당"이 기재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3. 적요란의 문구에 고객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기재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우대금리는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40⁸) ○ 우리은행		
구 분	내 용	ibank.com (
특별 우대금리 (소득 ⁺ 우대금리)	•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주6)} 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 최대 0.5%p 제 - 5회: 연 0.5%p, 4회: 연 0.4%p, 3회: 연 0.3%p 2회: 연 0.2%p, 1회: 연 0.1%p - 개인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신청 및 가입 후 1년주기로 심사 ※ 주6)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 우대금리는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자동이체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 자동이체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도 이체함 다른 금융회사 입출금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함 단, 타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 시 우대금리 요건 미충족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만기이자 산출근거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1 및 차 2 및 차 3 및 차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보유기간 이 율	비고		
중도 해지이율	3개월 미만 연 0.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 11개월 이상 ~ 3년 미만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 3년 이상 기본이율	일수 최저이율 연 0.15%		
	※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1		



7 8			ı II O	E	
구 분	내 용				
재가입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가능하나,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재가입) 가능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 기간에서 기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 ^{주가} 을 적용하여 산출(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주7)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				
	•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	등도해지 포함) 시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개인	소득	정부기여금 I	_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I 지급비율 ^{주8)}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I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I 산정 기준금액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I 산정 기준금액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I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개인	소득	정부기여금ㅍ		
정부기여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표 지급비율 ^{주8)}	
उ न्गजन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 중 40만원 초과금액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 중 50만원 초과금액	정부기여금 ㅍ 산정 기준금액의 3.0%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 중 60만원 초과금액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미지급	미지급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 주8)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및 「소득세법」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의 경우 지급비율 6.0%(정부기여금 I), 3.0%(정부기여금 II) 적용				

구 분 내 용 ①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②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지급함 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 및 3년 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③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① 중도해지 후 재기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③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③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또는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마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주의 ※ 반,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주의 ※ 개인소득심사결과를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 ※ 주의 (예시) '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②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 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 및 3년 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③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④ 경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⑤ 계약기간 동안 추신,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또는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주의 ※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주의 ※ 개인소득 심사는 가입일 또는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심사일 현재 개인소득심사결과를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 ※ 주의 (예시) '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년차('23.7.10~'24.7.31), 2년차('24.8.1~'25.7.31), 3년차('25.8.1~'26.7.31), 4년차('26.8.1~'27.7.31), 5년차('27.8.1~'28.7.9)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일시납입한 금액의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로 산출함. 다만, 이 적금에 일시납입한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함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경우 고객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특별중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구 분	내 용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0)}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10)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단, 3년 이상 경과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년 경과 시 비과세 적용 			

구 분	내 용 기계 명			oank.com	
일부해지	불가		명의변경	불가	woort
양도 및 상속	불가		만기 앞당김 지급	불가	
담보제공	가능 •	예금담	보대출은 예금 잔액!	의 95%까지 가능	
부분인출	입금 기준으로 적편 인출을 희망하는 경 합니다. ※법적 제한이 있는 경 • 부분인출된 금액어 를 함께 지급하며, • 가입일로부터 3년 생하는 이자소득에 • 부분인출 시 정부경 단, 가입일로부터	립금의 경우 보 영우 부분 이자율 이상 이 대해 기여금 3년 0	서는 인출하는 때에 물은 중도해지금리를 경과한 후 부분인출 한 서는 소득세 및 농어	인출이 가능 하며 점 방문을 통해 ₫ 해당 부분인출에 적용함 한 경우, 해당 인출 촌특별세가 면제된 인출할 경우, 해당	, 신청하여야 대한 이자 ^들 액에서 발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3 유의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³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1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및 국내거소신고증에 한합니다.
-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개인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상담센터(1588-5000, 평일 09:00~18: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